장애보상금 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30일			
청구인기재란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		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휴대전화 문자	수신	여부			
	<u></u> 주소			[] 예]] oŀr	니요 —		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		계좌번호						
	부상·질병 당시 소속 부대		계급・호봉						
	군번		입영일(임용역	일)					
	전역일		전역근거						
	제3자 가해사실 [] 있음	부상일・질병일/부상・질병장소							
	급여 제한 사유 [] 금고 이상의 형 확정 [] 다른 법령에 따른				른 재:	해보상금	수령		
군병원	신체장애등급		장애보상금	트급					
기재란	직책 계급		 성명			(서명 또	는 인)		
확인자			전화번호	፮: ()		_			
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				
					년	월	일		
청구인					(서명 또는	인)			
()군 참모총장 귀하									
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.									
					년	월	일		
()군 참모총 장 <mark>직인</mark>									
담당부서명: 담당자 성명: 전화번호:() -									
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									
첨부서류	무쪽 참조					수수 <u>:</u> 없음			

첨부서류	청구인	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	
	군병원장	1. 진단 세부 기록서 1부 2. 「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 1부	없음

작성방법

- 1.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- 2.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.
- 3.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.
- 4. 청구인 기재란의 급여 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[] 안에 "√" 표시를 하십시오.
- 5.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가. 1급: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1(심신장애등급표) 및 별표 2(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)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
 - 나. 2급: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1(심신장애등급표) 및 별표 2(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)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 - 다. 3급: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1(심신장애등급표) 및 별표 2(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)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
 - 라. 4급: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1(심신장애등급표) 및 별표 2(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)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
- ※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